

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수정 안내

- 고시 2020-95호(2020.5.12.) 개정사항 관련 -

1. 관련근거

- 가.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(고시 2020-31호, 2020.2.6., 고시 2020-95호, 2020.5.12.)
- 나.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진단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안내 (보험급여과-889호, 2020.2.20.)
- 다.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(보험급여과-2022호, 2020.5.12.)

2. 지역사회 주요 취약·집단 시설 감시 강화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검사의 산정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추가 안내하여 드립니다.

- 다 음 -

구 분	세부 내용
대상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○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 제5호 가목에 따른 병원(정신병원) 및 의원(정신과의원)○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* <p>* 단, 「의료법」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은 제외</p>

구 분	세 부 내 용
적용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상기관에 신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○ 다만,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*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신건강의학과로 입원한 경우에 한함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* 단, 「의료법」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은 제외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** 가-6 낮병동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는 제외</p>
산정횟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입원 당일 1회
적용수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‘누-658 라. 핵산증폭-정성그룹4-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[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] 소정점수로 산정함(단,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으로 청구코드는 한시적으로 D6584, 검사항목별 세부코드는 (04)로 기재)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* 신종코로나바이러스(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)검사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함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* 긴급사용승인 검사시약 목록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참조 (http://www.cdc.go.kr > 알림·자료 > 공고/공시)</p>
본인부담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에 따른 본인부담률 50%로 적용
청구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행 요양(의료)급여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청구함 ○ 진료내역 기타내역란(JX999)에 “무증상자입원”을 기재하여야 함
적용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20. 5. 22.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

연번	질의	답변
1	적용대상 환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?	<p>○ 아래의 의료기관에 신규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</p> <p>①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</p> <p>②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 제5호 제가목에 따른 병원(정신병원) 및 의원(정신과의원)</p> <p>③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 제5호 제나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*(종합병원, 상급종합병원 제외)</p> <p>* 단, ③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로 입원한 경우에 한함</p>
2	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시에도 적용되나요?	<p>○ 정신질환자의 비자의 입원시에는 무증상자가 아닌 기존 안내대로 가. 중 '조사대상 유증상자'로 우선 적용 가능합니다.</p> <p>* 「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시 코로나19 검사 안내」 (정신건강정책과-1796호, 2020.3.17.)</p>
3	입원예정인 외래내원 환자에게도 적용 가능한가요?	<p>○ 실제 입원이 이루어진 환자에게 입원 당일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</p> <p>* 단, 낮병동 입원은 제외</p>
4	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얼마인가요?	<p>○ 기존에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던 검사 비용의 50%에 대해서만 부담하게 됩니다.</p>
5	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 지원은 가능한가요?	<p>○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.</p>

연번	질의	답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	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해당 수가 청구방법은?	<p>○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1(상해외인)란에 “O”를 기재하여 의과 입원 명세서로 분리 청구, 입(내)원 일수는 “0”으로 기재합니다.</p> <p>- 상병은 정신과 입원의 주된 상병 기재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7	특정내역 기재방법은?	<p>○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(기타내역)에 “무증상자입원”을 기재</p> <p>- 이때, 반드시 타 JX999(기타내역)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657 945 1378 1151"> <thead> <tr> <th colspan="8">특정내역 (JX999)기재</th> <th rowspan="2">청구유형</th> </tr> <tr> <th>①</th> <th>②</th> <th>③</th> <th>④</th> <th>⑤</th> <th>⑥</th> <th>⑦</th> <th>...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무</td> <td>증</td> <td>상</td> <td>자</td> <td>입</td> <td>원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올바른 기재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무</td> <td>증</td> <td>상</td> <td>자</td> <td>입</td> <td>원</td> <td></td> <td>잘못된 기재</td> </tr> <tr> <td>무</td> <td>증</td> <td>상</td> <td>자</td> <td></td> <td>입</td> <td>원</td> <td></td> <td>잘못된 기재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특정내역 (JX999)기재								청구유형	①	②	③	④	⑤	⑥	⑦	...	무	증	상	자	입	원			올바른 기재		무	증	상	자	입	원		잘못된 기재	무	증	상	자		입	원		잘못된 기재
특정내역 (JX999)기재								청구유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①	②	③	④	⑤	⑥	⑦	..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무	증	상	자	입	원			올바른 기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무	증	상	자	입	원		잘못된 기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무	증	상	자		입	원		잘못된 기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